**10주차) 우리에게 근대의 법과 제도는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1차시 Page 2

근대국가는 여러가지로 규정할 수 있지만, 제도의 측면에서는 법치국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법치국가라는 제도의 형태는 언제 유입되었을까?

우리나라는 19세기 후반 이후 개항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서구 근대의 제도와 문물이 유입됨. 그 과정에서 서양의 근대 국가들의 사법제도에 관한 것들을 지식인들이 알게 됨.

식민통치라고 하는 통치형태 속에서 근대의 법과 제도가 인식된 측면이 있음.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법치, 법에 의한 통치가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경험이 되었는가, 특히 식민통치를 받으면서 법치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법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가, 개항 이후 집권세력이 추구했던 사법제도의 개혁, 그것이 가져온 변화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는가, 식민지 시기의 사법제도 운영의 전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조선시대 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범, 오늘날 형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짐. 조선시대의 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적인 제재가 따랐음. 그러한 법규들을 모아놓은 것이 조선시대의 법전임.

민사와 형사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존재하진 않았음. 전혀 없었다고 볼 순 없지만, 법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형법은 법전의 형태로 법규가 완비되어 있었음. 그렇지만 민사분야는 법전으로 되어있지 않고 주로 관습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음. 지역 공동체의 합의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음.

조선시대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유교적인 가치의 실현을 우선시하는, 유교적 법치주의를 지향했음. 그렇기에 국왕이 정점에 있는 유교적인 신분제의 질서, 삼강오륜의 원리가 법의 핵심 내용이었음. 그 원리가 법규에도 철저히 관철되었음. 그래서 같은 범죄라고 할지라도 유교적인 도덕의 기준에 따라서 형벌의 차등이 있었음. 양반이나 관료에 대한 일반 백성의 범죄, 부모나 연장자에 대한 범죄 등과 같은 것에 대해 훨씬 더 엄한 형량을 줌.

사법을 담당하는 국가 기구들과 별도로 향약, 동약과 같은 동네법이 존재함.

지역의 자체적인 공동체의 규약이 왜 중시되었는가?

조선은 유교의 나라임. 유교에서는 교화와 예치를 중시함. 그렇기에 사회 질서를 해치는 분쟁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사회가 자체적으로 합의해서 해결할 것을 권장함. 그러다 보니 법전에 존재하지 않는 동네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관습, 전통이 남아있음.

그 외의 특징으로는,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반역) 연대 책임을 지우는 연좌제를 적용함. 이걸 통해 가족이나 친족에 대해서도 사회 통제의 일부를 맡김.

범죄에 대한 처벌은 신체형이 대부분이었음. 여기에도 신분적인 차등이 있었음.

조선시대에는 감옥이라고 하는 구금의 형이 없음. 조선시대의 감옥은 지금과 기능이 달랐음.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미결수를 가두고 심문하기 위해 활용하는 시설이었음. 그렇기에 형벌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감옥이 가진 위상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조선시대 사법제도는 개항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Page 3

갑오개혁 당시 개혁을 담당했던 군국기무처에서는 사법개혁도 시도함. 홍범14조를 발표함.

갑오개혁을 시작하고 형조를 폐지함. 사법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법무아문을 설치함.

지방에는 지방관이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어서 직접 재판을 했었음. 지방관이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의 권한도 같이 가지고 있었음. 이 지방관의 권한에서 사법권을 분리시키려고 함. 독립된 재판기구를 만들고자 함. 법관의 재판을 통해서만 벌을 줄 수 있게 하고 연좌제도 폐지함. 재판제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한 상태에서 재판하고 처벌하는 관행을 금지함.

민형소송규정에 보면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려고 함. 민사재판은 손해배상을 다루는 것, 형사재판은 형벌을 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이 시기에 재판소구성법도 공포함.

법이 공포가 됐어도 이걸 전국에서 일원적으로 실시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인력이 없음(법관).

태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분의 차별이 폐지됨. 이전에는 굉장히 특수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사대부 계층은 속전이라고 해서 벌금을 내고 신체형을 회피할 수 있었음. 갑오개혁 이후부터는 특수한 경우 외에는 누구나 속전을 내고 신체형을 피할 수 있게 됨.

징역형이 처음으로 도입됨. 이전까지는 구금에 해당하는 형벌이 없었음. 징역형이 법률상으로 처음 생김. 징역형을 도입하려면 감옥의 설비를 갖추어야함. 형벌의 기능을 갖는 감옥을 만들려면 감옥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노역 작업장도 필요해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함. 형벌로는 징역형이 있지만 이걸 집행하려고 하면 집행할 시설이 없었음.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 정부가 들어서고 광무개혁을 시행함. 대한제국 정부는 황제의 전제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짐, 사법제도에 있어서도 그런 성격이 많이 반영됨. 형량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남. 엄벌주의를 채택함. 형사정책이 강경해짐.

구법(예전의 법)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형법대전을 보면 갑오개혁 이전과 비슷한 법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이 있음. 새로 재정된 부분이 많지 않았고 예전의 형법 체제와 조항이 상당부분 유지됨.

2차시 Page 5

조선시대 죄수의 수감을 관장하는 ‘전옥서’라는 부서가 있었음. 전옥서는 형벌이 확정되고 집행되기 전의 미결수를 수감하는걸 관장함. 갑오개혁 당시 정부가 전옥서를 폐지하고 병무청 산하의 ‘감옥서’를 두어서 거기서 관장함.

Page 8

갑오개혁 당시에 죄수의 심문을 위해서 고문하는 것을 공식적으로는 금지함.

갑오개혁이 일어나면서 형법 체계 면에서는 변화가 꽤 있었음. 그러나 실제로 그것들이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기록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원적으로 적용될 수 있던 개혁 조치로는 연좌제 폐지가 있음. 그렇지만 고문의 폐지와 같은 것은 현실에서 바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라는 기록이 있다.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신체형보다는 징역형으로 전환되는 것이 맞음. 특히 갑오개혁 이후에는 신체형 중에서도 태형을 장형을 태형으로(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통합함. 신체형 자체가 굉장히 전근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잔존하고 있었다는 한계가 있었음.

Page 9

서울은 갑오개혁이 일어나면서 재판소가 설치됨. 법관 양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음.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판사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음. 갑오개혁 이후에도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공동체 위주로 사법적인 판단을 내림.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고 행사하게 되면 위계구조, 전통적인 가치체계에 입각한 관습에 따라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경향이 강함. 마을공동체 같은 곳에서는 전통적인 방식들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음. 사법적 판단의 근대적인 공동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음. 관행에 의해 연좌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남(가해자를 찾지 못해 친척을 찾는 모습)

Page 10

행정과 사법이 전혀 분간되지 않음. 업무 자체도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3차시 Page 12

가장 큰 문제는 군수나 관찰사 같은 지방관들이 주제하는 재판(군수재판). 행정과 사법의 미분리, 고문이 여전히 이루어짐, 민사에 대한 처리방식, 재판절차나 여건이 미비함.

여기에 기반해 통감부가 1907년에민형소송규칙을 제정함. 같은 해 재판소구성법도 공포함.

법관들이 필요한데 법관이 많이 없다보니 일본인 법관들을 한국 법관으로 임용함.

삼심제도 채택됨. 경미한 사건은 일심으로 다루고, 종국에는 삼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삼심제도도 채택함.

형법대전을 개정함.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처벌조항들은 형법대전에서 삭제함.

통감부 시기에도 태형제도(전근대적) 없애지 않음. 제판제도를 만들긴 하고 제판소도 만들었는데 재판으로 가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조항들을 많이 넣었음. 범죄자라고 해도 재판을 통해 형을 확정해야 하는데, 법관이나 사법제도를 완비하기 위한 인적 여건이나 시설적 여건이 완비되지 않았음. 통감부시기의 사법제도를 보면 가급적 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들을 많이 집어넣음.

통감부가 들어온 이후 통감부가 관할하는 재판소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완비됨.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민형사 재판은 전면 통감부 관할이 됨. 그러면 삼심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 같은 것들이 이상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수적인 조항들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권한은 굉장히 강화되는 반면에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예심이나 공판 같은 절차가 간소화됨. 그렇게 해야 비용과 행정력이 적게 들기 때문. 근대적인 사법제도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균형적인 사법제도와는 다르게 인식됨.

형식적으로는 사법제도가 많이 개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 상당히 퇴행적인 조항들이 많이 있었음. 근대법에서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많이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사법제도의 개혁이라고 볼 수 없었음.

Page 13

식민지 조선, 한일병합이 되고 난 이후의 사법제도를 보자(조선총독부때)

식민지 조선의 사법제도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점은, 통감부 시기때는 식민지는 아니고 보호국이었음. 강제병합 후 식민지가 됨. 그들이 말하는 워딩에 따르면 식민지는 일본 영토의 연장임. 여기도 일본의 영토임. 합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선인도 일본의 국민이라고 함. 그런데 사법제도를 보면 당시 일본은 제국헌법이 이미 있었음. 신민의 권리와 의무가 명기되어 있음. 그런데 이 헌법이 식민지에 적용이 되었느냐? 라고 하면 적용시켜주지 않았음.

일본의 제국헌법에 보면 신민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음. 그 권리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참정권이었음. 그런것들을 조선에게 전혀 적용시켜주지 않았음.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이라고 하는 곳은 엄밀히 말하면 삼권분립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음. 조선 통치의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총괄이 법령을 제정할 수 있게 함. 입법권도 총독이 행정권과 함께 가지고 있었음. 조선총독에게 법령을 제령할 수 있는 제령권이 주어짐. 법의 집행자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삼권분립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음. 그런 점에서 조선의 사법제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음. 일본 헌법의 바깥에 있는 존재였음. 그렇기 때문에 일본 헌법에서 삼권분립을 보장한다고 할지라도 조선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음.

그러한 조건 속에서 사법제도의 개편이 또 한번 이루어짐. 식민지 시기의 형사법을 봤을 때 형사관계의 법령의 가장 근거, 기본적인 법령은 조선형사령 이었음. 민사와는 달리 형사는 일본형사법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옴. 그런데 일본 형법에는 없는 것을 조선형사령 안에 추가함. 태형령. 조선총독부조차도 태형령을 없애지 않음. 아예 조선태형령이라고 해서 새로 발포함. 그래서 일본 형법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태형을 조선인에 대해서는 적용함.

조선형사령은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봤을 때 강제수사가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이 있었음. 특히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굉장히 독소적인 측면이 많았음. 통감부 시기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수사기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됨. 거의 예심판서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돼서 법관에 의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일정하게 재판을 통해서 견제하는 근대적인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 상당히 배제되어 있음. 경찰이나 검찰이 강제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넓었음. 경찰과 검찰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함. 거기다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공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를 무너뜨리는 조항들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식민지 형사제도의 특징이었음.

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 삼심의 공판과정이나 수사기관(경찰, 검찰)을 견제하는 재판을 적법하게 다 보장을 하면 너무나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감.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재판을 하기 어려운 방식의 형사체계를 구축함.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달성하고자 하는 식민지 시대의 기본 발상이 문제였음.

식민지에서는 검찰보다는 경찰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었음. 그게 치안 유지에 가장 효과적이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사법을 상당히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감.

Page 16

치안유지법은 식민지의 굉장히 억압적이고 폭압적인 사법제도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법령. 특히 25년이란 시기는 3.1운동 이후, 문화통치라고 해서 조선인들에 대해 굉장히 제한적으로 출판의 자유를 허락함.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조선인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통치하기 위한 법령이었음. 치안유지법에서는 경찰이 직결 처분하는, 식민지형 경찰사법을 대폭 인정함. 소송경제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식민지 조선에서 경찰의 감시망이 굉장히 촘촘했다는 것을 의미함. 대부분 경찰 선에서 다 처리가 되었음. 공권력의 최일선에, 통치의 최일선에 경찰이 있었음.

경찰은 사법적인 영역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자의적인 권력 남용의 자유를 보장받았음. 민사 분쟁에 대한 조정권도 경찰에게 있었음. 재판소가 설치되었지만 전국을 커버할 만큼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음. 그런 지역에서는 경찰서장이 관할 구역 내의 민사사건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음. 조정이 성립됐다면 그 조정의 당사자는 다시 소송을 걸 수 없었음.

삼심제에 달하는 사법제도를 마련은 했는데, 당사자가 자유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기묘한 구조를 만들었음.

Page 19

조선총독부는 최소비용의 최대효과를 누렸기 때문에 소송이 많지 않길 바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 재판건수는 굉장히 많았음. 재판제도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보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았음.

식민지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는 있었지만 사법권의 독립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그래서 재판제도 자체에 대한 저항감은 경찰에 대한 저항감보다는 덜한 편이었음.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사법제도의 보호를 형식적으로는 받을 수 있었음. 재판에 가게 되면 한계는 있었지만 비교적 독립적이고 공정한 편이었음.

사법권과 행정권이 제대로 분리되지 못했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있었음. 사법제도의 한계. 거기다 기소나 판결을 하는 검사와 판사의 인력을 보면, 조선인의 비율은 5%정도밖에 되지 않았음. 피 식민지민으로서, 조선인으로서 이익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보호가 되었느냐 라고 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

재판에서 경찰기구와 비교했을 때 공정성을 기대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할지언정, 사법제도 전반적으로 조선인에게 근대적인 법치의 경험이 달가웠는가,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줬느냐 라고 하면 그러긴 어려웠음.

근대의 법치에 대한 한국인들의 첫 경험은 식민통치라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억압적이고 공포심을 주는 경험일 수밖에 없었음.

법과 제도가 나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효율적 통치를 위한, 치한유지와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써 느껴질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많았음.

**11주차) 근대 보건과 위생**

1차시 Page 2

근대적인 보건위생이라고 하는 변화를 추동하는 과정에서 세균설이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함. 세균설이 일으킨 변화는 근대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음. 서구가 근대화되는 과정과 우리의 근대화 과정은 어떻게 다르고 무엇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본다.

세균설은 권력이나 일상생활의 변화와 같은 근대화의 과정 전반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이 있음. 전근대로 대변되는 구시대적인 낡은 생활방식을 바꿔놓은 것이 세균설임.

세균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이런 세균이 서식할 수 있는 불결한 몸과 환경은 우리가 고쳐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근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함. 전시하고 보여줌으로써.

2차시 Page 5

조선 정부에서도 근대적인 위생의 개념을 알게 됨. 그 위생 개념을 전제로 해서 불결한 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환경의 정비 같은 것을 시도함. 근대적인 위생관념을 전제로 한 계몽과 실질적인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음. 그렇지만 이러한 추진의 주체가 통감부에 이어서 총독부로 넘어가게 됨.

Page 7

18세기는 균이라는 존재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기 이전이었음. 그런데 어떻게 위생경찰이 있을 수 있는가?

세균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전에도 불결한 환경과 악취가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음. 이것을 장기설이라고 함. 이러한 장기설 자체가 경찰에 의한 보건위생행정을 뒷받침하고 있었음. 그러다 1876년에 균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세균설이 확립되게 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경찰력에 의한 위생행정이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됨.

병이 퍼지게 되면 모두가 불행하니까 다수의 행복을 위해 이것을 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국가이성의 관념). 국가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다 라는게 정당성을 얻게 됨.

위생경찰의 개념은 19세기에 일본에서도 도입됨. 일본은 경찰중심의 위생체재를 받아들임.

Page 8

근대적인 위생관념의 도입, 그 행정의 사무를 경찰이 담당하게 되면서 전통시대에는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범죄들이 생겨남.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의 의도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으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선한 의도임.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은 결국 개인의 자유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도 큼. 인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음. 그런데 경찰을 통해서 이 사무를 한다고 할 때 억압적인 방식으로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음. 이렇게 억압적인 방식을 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 빠른 시간 안에 비교적 값싼 방식으로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음. 사람들을 계도하고 계몽하고 불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됨. 이전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것이 범죄가 됨, 이걸 부정하는 마음에 듦, 신체와 내 생활에 가해지는 과도한 권력에 대한 저항이 나타남.

Page 9

식민지 시기의 보건 위생 행정을 보면 일상적으로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남.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다고 할 때 이것이 근대화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상당히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고 관철됨.

식민지시기의 위생행정은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폭력 안에는 직접적인 폭력도 있고 구조적인 폭력도 있음.

직접적인 폭력은 경찰들이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사람들을 검사할 때 폭력을 행사함.

임금차별, 소득수준에 따라서 위생생활을 실천의 난이도가 달랐음.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폭력에 해당함.

상하수도 시설, 병원 시설은 많이 짓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인은 위생관념이 낮기 때문에 강제로 통제해야 한다는 폭력들이 정당화됨. 조선인은 위생관념이 낮고 문명화가 덜 됐기 때문에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서만 위생 행정을 관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안착됨.

전염병을 예방한다는 이유 아래서 경찰이 나서서 조선인들, 식민지민의 일상에 개입하고 규율할 수 있게 됨.

위생은 근대의 상징이었음.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의 성패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도 했음.

Page 10

보건부 역할을 하는 위생행정기구가 있고 경찰이 위생의 사무를 하는 이원적인 체제에서의 위생행정이 일본의 방식이었다면, 조선은 보건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가 없었음. 경무부 안에 업무가 들어있을 뿐이었음. 그래서 뭐든지 경찰이 주도하는 시스템이었음.

3차시 Page 12

콜레라는 가장 많이 창궐하던 전염병이었음. 콜레라의 발병 원인, 전염경로는 과학적으로 파악되었지만 치료방법, 약의 효능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였음. 그렇기에 예방하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었음. 그런데 그 예방의 방법이 개인 위생에 책임을 지우는 부분이 아주 컸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경찰이 깊게 개입해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Page 13

그렇기 때문에 위생 행정은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식민당국은 비위생이 조선인의 민족적 특성이자 오래된 습속이라고 규정함. 조선인 지식인들도 여기에 일정부분 동조하지 않을 수 없었음.

경찰, 순사, 위생경찰 같은 사람들이 건병 호구조사(병을 검사하기 위한 목적의 호구조사)도 가능했음.

사적 생활공간에서 국가의 감시가 무방비 상태에 일어남.

Page 14

근대적인 의료시설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음. 그러다 보니 전염병은 예방하는 것이 1차이고, 조기에 발견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음. 그래서 가구별로 수시로 가서 검사하는게 정당화됐음. 조선총독부에게는 검병호구조사를 하는 것이 전염병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음.

Page 17

콜레라 소요사태와 순화원에 대한 사회적 불만 때문에 사설격리소가 생김.

20세기 초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는 위생경찰, 의사경찰이라는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었음. 경찰 중심의 위생행정이 보건문제를 풀어가는 중심 이념으로써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되었기 때문.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보호를 제공할 대상이라기보다 자연인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사상으로 나아감. 집단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리주의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개념이 성장함. 그렇기 때문에 경찰행정을 대신해서 인권에 기반을 둔 보건개념과 정책을 확충해가야 한다는 개념이 확산된 상태였기 때문에 20세기 초에 의사경찰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던 유럽에서는 더 이상 경찰이 중심이 되는 위생행정을 하지 않았음.

**12주차) 유관순의 ‘발굴’**

1차시 Page 2

유관순이 어떻게 해서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었는가?

Page 5

그동안 대한민국의 여러 사회 정치 세력들은 각기 자신의 정당성, 정통성을 대중에게 표출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민족적 정통성을 표출하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3.1운동을 자주 소환시켜 왔음. 우리가 식민지라는 공통된 경험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그것을 통해서 민족적 주체, 정치적 주체로서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내세우고자 함.

대한민국, 특히 해방 이후의 우익 계열에서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었음. 단독정부의 정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주로 3.1운동을 민족정신의 표상으로 상징화를 함.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동시에 개화파에서 독립협회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를 이어받는 상징으로써 3.1운동에 결합시킴. 그러한 서사의 가운데 자연스럽게 유관순이 대두함.

3.1운동이 민족적, 정치적 정당성과 정통성을 표출하는 도구로 활발하게 소환됨.

왜 굳이 유관순이어야만 했는가?

Page 6

유관순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관순의 이야기가 통용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여건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1945년 이전(식민통치를 받는 상황) 조선총독부의 통치 하에서는 유관순은 물론이고 3.1운동에 대한 이야기조차 언급하기가 어려웠음.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은 물론이고 그와 연관된 유관순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어려웠음.

1945년 이전에 유관순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나 기억 없는 상태에서 해방 이후에 유관순이라는 인물이 알려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인물의 발굴과 소환, 확산은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가?

한국사회는 해방 직후부터 3.1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둘러싸고도 좌와 우 진영이 상당히 대립했음. 아직 우리의 정부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신탁통치를 수용하게 됨.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이 들어와서 신탁통치를 하게 됨.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좌익 진영과 우익 진영 양 진영이 서로 극심하게 대립함. 그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의 제일 첫머리에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수립된 정부라고 선언함.

Page 7

유관순에 관한 기록을 공식적으로 출간하기나 공유하기는 어려웠음.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서 제외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언론들이 있었는데, 그런 언론에서는 유관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살펴보자.

신한민보는 미국 센프라시스코에서 발간되었던 신문임.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집필한 책.

적어도 식민지 시기에는 유관순과 관련된 한국 내의 기록은 없다. 유관순은 해방 이후에나 대중에게 알려졌다.

2차시 Page 8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길로 접어드는 유사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잔다르크가 등장함.

유관순을 잔다르크에 비유하는 것은, 유관순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관순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다 쉽게 대중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장치였다.

Page 10

1947년 유관순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박인덕과 신봉조

Page 11

박인덕과 신봉조는 ‘이화’라는 연결고리가 있음. 유관순과도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음.

박인덕과 신봉조가 해방 이후 새로운 공간인 한반도에서 자신들이 사회 지식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거 행적을 포장할 필요가 있었음. 친일을 했던 과거 행적을 희석시키고, 자기들이 과거에 민족을 위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내세워서 새로운 도덕적 권위를 찾아야 했기 때문. 그 권위를 부여해줄 수 있는 수단, 상징으로 유관순을 발견함.

Page 12

유관순은 46년 10월 무렵에 처음으로 이화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에게 알려져서 기념사업회가 조직되어 이 시점까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관순은 김마리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화랑 연결고리가 강한 인물이었음. 이 점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됨.

Page 13

조선영화령: 영화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친일 선전 영화를 제작해야하는 것을 강제하는 법령

유관순 발굴과 기념사업은 해방 이후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음. 유관순을 알리기 위해 앞장선 인물들은 이화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던 박인덕, 신봉조 등이고 이게 상당한 힘들 가지고 각종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은 미군정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협조하고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우익 계열의 지식인들이 많이 참여했음.

Page 16

교과서에 유관순이 실린다는 것은 1940년대 후반 기념사업회의 활동의 결과, 유관순에 대한 대중적인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기 때문에 국민교육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교과서에 실렸다고 볼 수 있다. 기념사업회의 사업들이 상당히 대중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유관순 기념사업회가 조직되면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게 되었다.

**13주차) 해방전후의 한국 정치와 사회\_제주**

1차시 Page 2

1945년 해방부터 1950년 사이의 시기는 우리가 해방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기의 사회모습이 상당히 많이 잔존하는 시기이다.

제주 4.3사건은 외부와 단절되기 쉬운 특수한 조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Page 3

제주도는 우리 같은 농업문명 사회에서는 이상적인 거주지는 아니었음. 식민지 시기에도 제주도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곳이었음.

지리적 위치 때문에 육지보다는 일본과 가까웠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제주도민이 강제 동원을 당했음. 일본이 전쟁을 위한 기반사업을 짓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인적, 물적으로 많이 힘들었음.

1945년 해방 후에 제주도가 살기 나아진 것도 아니었음. 기후 문제로 흉년이 지속되었음. 제주 4.3사건은 그러한 배경에서 일어나게 됨.

4.3사건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임. 2000년대 이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짐.

Page 5

45년~48년 사이에 국내의 좌익과 우익이라고 하는 정치세력의 대립 양상이 굉장히 극대화됨.

각 정치사회세력은 3.1절 행사를 치름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민족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음. 당시 3.1절 기념행사가 갖는 중요성은 엄청났음.

2차시 Page 6

3.1절 기념행사가 정치적 정당성, 민족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사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니, 47년 3.1절 기념행사가 각 지역에서 열리게 된다. 많은 지역에서 좌익계열과 우익계열이 따로 준비를 해서 개최되었음.

부산의 경우, 해방 후 3.1절 기념 행사 뿐만 아니라 각종 기념행사들이 있을 때 좌익계열과 우익계열이 단일한 보조를 취해서 협의해서 함께 치르려는 노력을 상당부분 해왔던 곳이 부산임.

그런데 47년 3.1절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당시 우리는 미군정기였는데(미군이 들어와서 통치) 진영대립이 너무 격화되다 보니 치안을 이유로 합동행사를 치루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음. 당시 물리적인 충돌도 상당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

부산에서 47년에 치뤄진 3.1절 기념행사는 우익진영은 부산의 공설운동장에서, 좌익진영은 충무동 광장에서 각각 따로 개최가 되었음. 당시 이승만을 이완용이라고 비유하던 우익 청년을 폭행함. 그러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시작됨.

이 행사에서 좌익과 우익이 격하게 충돌하고, 경찰까지 발포하게 되면서 다섯명이 사망하게 됨. 경찰에서 사건에 대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날의 폭력 사태는 남로당 계열의 지시와 조종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라는 입장표명을 함. 남로당 청년 부원들을 체포함. 하지만 먼저 뛰어들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우익진영의 청년단원들이었음.

이 발포 사건으로 대중들은 경찰에 대해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이런 사회적 분노를 놓치지 않는 정치세력들이 나오게 됨. 이 3.1 발포사건을 계기로 당시 조선 노동조합 전국 평의회(전평의)가 3/22에 항의의 의미로 총 파업에 들어감.

부산에서 경찰서장이 위협사격을 함, 어찌됐든 이 발포사건의 책임자는 부산경찰서장임.

경찰들도 파업에 참여함, 60명이 넘는 경찰들이 파면당함, 경찰력에 결원이 발생함. 이 결원을 충원해야 하는데, ‘서청’이라고 서북청년단 소속의 인원들로 경찰력을 충원함.

그로부터 1년 후 1948년 3월 1일에 미군정에서 5월 10일에 남한단독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좌우합작 시도, 협의를 더 이상 안하고 남한쪽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이것은 당시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남로당 계열의 세력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을 주는 발표였음. 이 발표 이후 남로당 계열 쪽에서는 전국적으로 5월 10일 총선거 실시에 반대하는 활동들을 전개함.

여기까지의 전개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 경찰에 대한 제주도민의 반감이 형성되었고 결원 경찰을 서북청년단원들로 충원을 했음. 그러한 가운데 48년 5월 10일에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었음. 여기 반대하는 남로당 계열의 좌익 세력들이 총선가 반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함. 이 모든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4.3사건의 계기가 됨.

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남로당 제주도당의 단원인 김달삼이 350명과 함께 무장을 하고 도 내의 24개 경찰 지서 가운데 12곳을 일제히 급습함. 당시 이 행위는 남로당 중앙당과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이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일으킨 것으로 보임. 이 무장 폭동은 다가오는 5월10일 총선거 반대 활동이었음. 이 무장한 제주도당 당원들은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해서 경찰관, 경찰력으로 충원 보충되었던 서북청년단 단원들, 몇몇 우익단체 요인들의 집도 함께 습격함.

제주도는 외부와 고립되기 쉬운 지역임(섬). 그리고 이 시점에서, 총선거를 한달 남겨두고 군정이 과연 무장 폭동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상당히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제주 4.3사건의 실질적인 주동자들은 이들이나 마찬가지임. 경찰관과 그들의 가족, 서북청년단 단원들과 가족들, 우익계열 단원들의 가족들을 자의적으로 처형함.

미군정은 사건이 일어난 이틀 후 제주도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함. 군정에서도 무장폭동이 맞다고 인정한 것임.

비상경비 사령부를 설치하고 진압을 위해 각 도에서 군대, 경찰, 그와 더불어 서북청년단과 같은 조직도 더 많이 모아 증강해서 제주도에 파견시키고 제주를 고립시킴. 해상교통을 차단함. 미국 군함을 동원해서 해안도 봉쇄시킴. 4/28에 경찰과 무장대가 회담을 갖게 됨. 일종의 평화협상을 체결해서 지금부터 72시간 이내에 양측 다 전투를 중단한다고 합의함. 그런데 깨짐

평화적으로 회담을 해서 사건 자체를 마무리하자는 쪽이 있었고, 강경진압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을 정도로 경찰 내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었음. 게다가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서북청년단 쪽에서 제주도 오라리라는 곳에서 방화를 하고 상대편에서 방화한 것처럼 조작하는 사건이 일어남.

선거반대운동을 극단적으로 일으킴

Page 7

남로당은 사회주의 정당. 식민지 시기에는 사회주의 정당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음. 광복 후에는 공식적으로 양지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됨. 미군정이 들어옴, 미군정은 사회주의를 싫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상당부분 사상의 자유를 용인함.

그런데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경색되다보니 당시 사회주의계열 정당에 대한 탄압과 제한적인 조치들이 시작됨. 결정적으로 46년 5월에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 일어남, 이 사건을 계기로 군정이 사회주의 정당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부 남로당 장로들을 체포함. 남로당 계열, 좌익계열 쪽에서 9월에 총파업을 추진함.

이런식으로 물리적인 행동을 추진하게 되면 더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음. 남로당을 포함한 당시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모여서 사회주의 세력을 재정비하고자 3당 합당을 함. 양지에서 활동하기 위해 합당해서 조직한게 남조선 노동당임(남로당)

이때도 합당한걸 봤을 때 남로당은 대중정당을 지향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임. 게다가 그당시 기준으로 노동당이라는 명칭은 공산당과 거리가 있는 개념이었음. 3당 합당 이후에는 미군정과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물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조심함. 그러면서도 미군정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업 같은 것들을 주도하는 활동은 계속함. 여러 사건들을 거치게 되고,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더욱 경색되다 보니 남로당의 대중정당을 지향하고자 했던 기조가 많이 바뀐 걸로 보임. 특히나 48년 5월에 단독정부 수립을 하겠다는 것이 가시화되고 본격화되다 보니 이것에 남로당이 반발하여 굉장히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함.

Page 8

서북청년단은 우익 청년단임. 북한에서 월남한 애들임. 남한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음. 이런 청년들을 단체적으로 포섭해서 단체생활을 함. 이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이 엄청났음. 그 적대감을 활용해서 공동생활 시키면서 좌익진영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데 도구로 사용함. 이런 류의 행동은 좌익 계열에서도 똑같이 많이 했음. 우익 계열에서는 서북청년단이 좌익계열 조직들을 공격하는 주력이었음.

왜 북에서 내려왔는가? 북쪽 같은 경우는 식민지 시기까지만 해도 개신교도가 굉장히 많았음. 그런데 소련 군정이 들어오게 되면서 개신교 계열 인사, 땅을 소유한 지주, 일부 기업가와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심하게 탄압함. 그 탄압을 피해서 남쪽으로 도망 올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이었음. 단순히 개신교도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활동 자체를 제약 받거나, 당연한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도 많았음.

제주도 경찰력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서북쳥년단 단원들이 들어간 것은 좋지 않은 결정이었음. 완전히 경찰이나 군인의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군령이나 경찰령의 통제를 잘 따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사적 적개심이 많은 단체였기 때문에 토벌대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서청 소속이었음. 서청의 가장 큰 문제는 남로당원들을 색출하고 잡아들이는 것을 명목으로 그 행동을 실제로 하지 않은 민관인들, 때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군경의 가족들에게도 사적인 제재를 가했다는 것이었다.

4.3사건 자체가 이렇게 길게 장기화된 것은, 오라리 사건도 그렇고 외지인들로 구성된(서청) 진압군, 특히나 토벌대라고 불리는 서청이 제주도민을 학살에 가깝게 사적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 자체의 민심을 군경이 오히려 크게 잃었다라는 점도 이 사태가 장기화되게 한 데 큰 점이다.

3차시 Page 9

남로당의 극심한 선거 거부 운동의 결과인지, 제주도는 투표가 과반 미달로 무효처리가 됨. 그러다 보니 그 달 23일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게 됨.

결과적으로 제주에서는 5.10 총선거의 결과 투표율 미달로 인해 국회의원 3자리 중 한명밖에 뽑히지 않음. 선거 자체가 무산이 된 것과 마찬가지임. 새로 수립을 앞둔 정부와 미군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음.

정부는 제주도에 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었음. 대한민국의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에서(육지에서) 군 병력을 제주도에 더 많이 보냄. 48년10월 17일에 소개령을 내림.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사람은 총살한다. 이 중산간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해변쪽으로 강제 이주시키도록 명령을 내림.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함. 중산간지대를 초토화시킴. 11월 중순부터 다음해 2월까지 4개월간 진압 병력이 중산간지대를 다니면서 마을마다 불을 지르고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부분 죽임. 이 4개월 기간동안 남로당과 상관없는 많은 인명들이 희생됨. 왜 나가지 않았는가? 중산간지대 마을은 폭언문과 소개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

4개월 후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해서 선무작전, 산에 있는 사람들을 회유하는 작전을 펼침(사민정책을 펼침). 2달 후 재선거를 치루려고 했기 때문. 남로당원 중 주동자 위치에 있던 ‘이덕구’라는 인물이 산에서 발견되어 사살되면서 남로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무장대는 이때쯤 사실상 궤멸됐다고 얘기됨.

1년 뒤 한국전쟁이 발발되면서 과거 남로당 같은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에 한번이라도 이름을 적어낸 사람들은 요시찰자라고 해서 싹 잡아들임. 누가 언제 어디서 적군과 소통할 지 모르기 때문. 이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살됨.

57년 4월까지 내려오지 않았던 최후의 무장대원인 오원권이 체포되면서 끝남.

Page 10

4.3사건은 오랫동안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원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알려져 있음. 하지만 남로당 제주도당원들은 북한은 물론이고 중앙당의 지령도 받지 않음. 독단적으로 일으킨 폭동임. 어쨌든 남로당원들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부분은 맞음.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남로당원들이 일으킨 무장 폭동을 뛰어넘는 무고한 희생자가 많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음. 80년대 이전까지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음.

4.19 이후에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환경이 바뀌었다고 판단했는지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러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묻힌 무덤이라는 듯으로 백조일손지묘 라는 비를 세움. 그런데 군사정부가 들어서는데 당시 군사정부가 이 묘를 없애고 파괴함.

이렇게 금기시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사회 내에서는 이 사건을 잊기가 굉장히 어려웠음. 굉장히 강력한 제주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억 중 하나로 남을 수밖에 없었음. 이런 걸 로컬 기억이라고도 말함.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 자의식을 형성하게 만드는 사건일 수밖에 없었음. 제주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제한성과 고립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로컬 기억이 생성되는 것임.

언어적, 문화적으로도 고유성이 강한 곳이다 보니, 이런 4.3 사건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 내에 죽었던 사건 같은 경우 기억에서 사라지기 어려움. 그러면서 로컬 기억이 생성됨. 제주도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 공간적 제한성과 고립성에서 기인한 것이 큼.

Page 11

군, 경찰, 서북청년단도 많이 죽었음. 그렇게 희생된 사람들과 그 유가족들은 4.3사건을 국가에 대한 반란이자 폭동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음. 내 가족이 그걸 진압하다가 죽었기 때문. (2, 3번에 해당하는 희생자들)

4.3사건의 전체 사망자 가운데 78%에 가까운 사망자가 군경과 서청, 토벌대의 처형으로 희생된 민간인이었음. 4.3은 국가에 대한 폭동을 반대하는 관점(폭동론)에서 봤을 때는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이 주요한 희생자임(4번).

폭동론에 반대하는 관점에서는 토벌대(군경, 서북청년단)의 처형으로 희생된 민간인들을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라는 규정을 함.

제주에서는 무장대에 소속되었다가 죽었던 사람들을 추모하는 일이 공식적으로 있진 않았음. 사적 영역에서의 추모만 있었음.